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5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산 소득공제(임광현의 원안)	2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5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22.
-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사용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같은 육아 비용 등에 많은 소득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126조의 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산 소득공제(임광현 의원안)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30% (40%)			-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검토의견

현행		임광현의원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맞벌이 부부 합산 공제 허용 및 공제한도 상향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td><td>40% (50%)</td></tr><tr><td>-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td><td>40% (80%)</td></tr><tr><td>-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 (40%)</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td><td>1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구분	공제율																																																
- 전통시장 ※2023.4.~12. 사용분	40% (50%)																																																
- 대중교통 ※2023년 사용분	40% (80%)																																																
- 도서·신문·공연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2023.4.~12.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신용카드	15%																																																
-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24년 한시적용	10%																																																
○ 공제한도 - 개인별 적용 - 부부 합산 불허		○ 공제한도 - 개인별 적용: (현행과 같음) - 맞벌이부부 합산 허용:																																															
<table><tr><td colspan="2">총급여</td><td>7천만원 이하</td><td>7천만원 초과</td></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200</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도서 등</td><td>해당없음</td></tr><tr><td>24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table><tr><td colspan="2">총급여</td><td>7천만원 이하</td><td>7천만원 초과</td></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600</td><td>500</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600</td><td>400</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도서 등</td><td>해당없음</td></tr><tr><td>24년 소비증가분</td><td colspan="2">200</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600	5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600	4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20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10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600	500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600	400																																														
	대중교통																																																
	도서 등		해당없음																																														
	24년 소비증가분	200																																															

* 임광현의원안 2024. 7. 22. 제출(의안번호 2057)

□ 개정안은 각각의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합산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인당 한도의 2배로 규정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 사용분은 50%, 2023년 연간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³⁾(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은 40%),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고, 2024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며,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됨.

3)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❶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❷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❸ 전통시장 ※ 2023년 4.1 ~ 12.31. 사용분	40% (5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❹ 대중교통 ※ 2023년 1.1 ~ 12.31. 사용분	40% (80%)			
❺ 도서·신문·공연·미술관· 박물관·영화관람 등 ※ 2023년 4.1 ~ 12.31. 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40%)			-
❻ 2023년 대비 2024년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 2024년 사용금액 분에 한시적으로 적용	10%		23년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의 합산 공제를 허용하고,

만약 배우자 역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공제금액 및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개정안은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합산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공제한도는 2명의 한도를 합친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가계지출이 적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가구에게 공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소비하는 경우부터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지출이 맞벌이 부부 중 1명의 총급여액만 초과하면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지출이 적은 가구에게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육아비용 등 지출이 큰 가구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부부합산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부부 중 더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입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공제 혜택을 집중시켜 공제액을 늘림으로써 육아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현행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체계와 상충되어 조세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임.

현행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7천만원 이상인 자보다 50만원 높은 기본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사용분에 대해 30% 추가 공제(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0%)를 인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부부 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현행법과 같이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상향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부부 중 1명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 근로소득자 명의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동일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7천만원을 넘는 가구에 비해 보다 큰 공제한도에 직면하게 되어 가구간 수평적 형평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보임⁴⁾.

반대로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구간 소득이 동일하지만 부부 서로 간의 소득격차가 더 클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합산에 따른 세부담 감소 혜택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

4)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지만 A가구는 부부의 총급여액이 각각 7천 5백만원으로 동일하고, B가구는 아내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고 남편의 총급여액은 7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A가구의 경우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개별공제, 합산공제 모두 동일하게 기본공제 한도가 총 500만원인 반면, B가구의 경우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개별공제 시 기본공제 한도가 총 550만원인 반면 남편 명의로 합산공제 시 한도가 600만원으로 증가하여 두 부부간 공제한도 차이가 더 커지게 됨.